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 정책방향



## 이영석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 수료  
前) 환경부 수도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tel. 02-509-7908 | ecoism@hanmail.net

## 목표관리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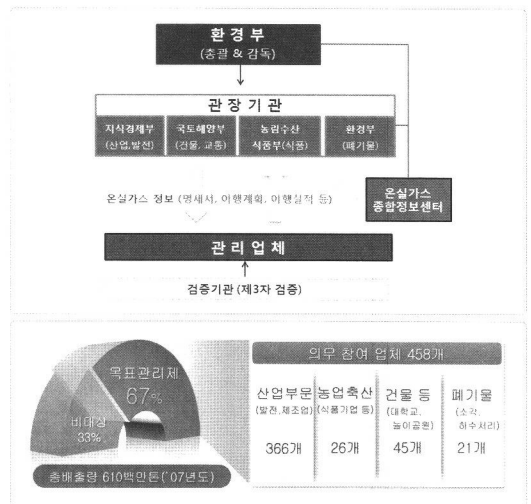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이하 "목표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를 간단히 정의하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앞서 지정된 관리업체(458개)들에게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하였다. 이로써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총괄-관장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에서 제도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준·절차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부문별 관장기관의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문별로 관장기관을 맡는

농림수산식품부(농업·축산·식품 분야), 지식경제부(산업·발전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국토해양부(건물·교통 분야)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 이행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그림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체계도 및 관리업체 현황〉



##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환경부는 2011년 3월 16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담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고시하였다. 운영 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는 물론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MRV) 방법과 조기 행동(감축)의 인정, 검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 관리업체의 지정

〈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는 업체가 소유·운영하는 생산시설 외에도 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 표 1. 관리업체 지정기준 〉

구 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CO <sub>2</sub> -eq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500	100	350	90	200	80

\*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 기준

### 2. 감축목표의 설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토대로 설정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관리업체의 목표를 협의·설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과거 실적 기반방식과 벤치마크 기반방식으로 구분되며,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2013년도 목표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게 된다.

### 3.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목표관리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산정·보고·검증(MRV)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관리업체의 인벤토리 또는 감축 실적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PCC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관리업체의 산정·보고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절차 〉



### 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운영지침에서는 제3자 검증을 수행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요구 조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현재, 한국품질재단, 삼일회계법인 등 24개의 검증 기관이 지정되어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2.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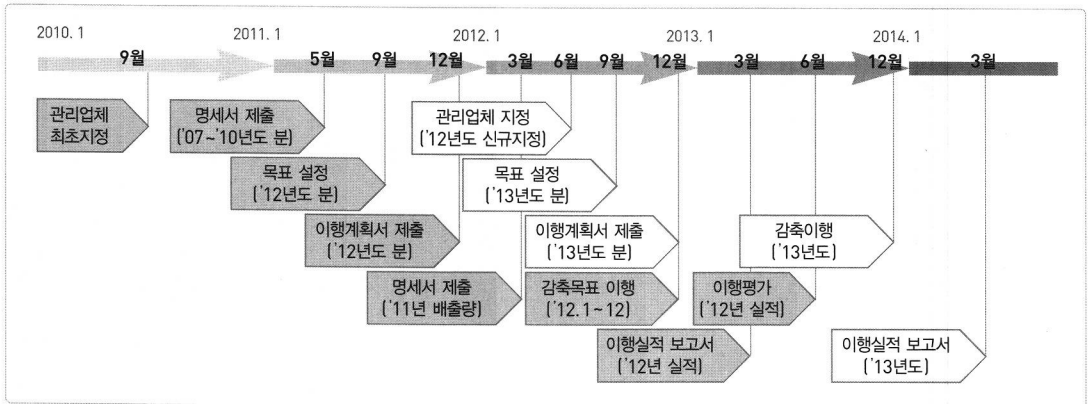
No	기관명	No	기관명	No	기관명
1	한국품질재단	9	EQAICC	17	환경보전협회
2	삼일회계	10	한국SGS	18	TUV-SUD
3	품질보증원	11	신화엔지니어	19	산업기술시험원
4	안진회계	12	생산성본부인증원	20	삼정회계
5	DNV인증원	13	화학융합시험연구원	21	대일이엔씨
6	한국표준협회	14	능률협회인증원	22	지속가능인증원
7	BSI코리아	15	산림조합	23	[주]메트릭스
8	로이드인증원	16	가스안전공사	24	[주]기성이엠에스

(검증기관 지정일자 순)

### 목표관리 추진일정

작년에 목표를 설정한 458개 관리업체들은 2011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올해 초부터 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개별업체들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관리업체 지정계획에 따라 2012년 3월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2011년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 관리업체 지정에 활용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의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신규 지정된 관리업체들은 20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받아, 2012년 12월까지 201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업체들은 올해 이행실적을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개선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림 3. 연도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 추진 일정 〉



## '12년도 목표관리제 주요 추진계획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환경부는 2012년도에 연중으로 「관장기관 메타평가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메타평가란 관장기관의 목표설정 및 관리업체 지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으로서 2012년도에는 458개 목표설정 관리업체 중 약 120개(배출량 기준 90%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과다 계상요인 발견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목표설정체계에서 先 배출허용량 확정 → 後 예상배출량 협의 체계로 강화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개별업체간 할당량간 연계성을 높여 목표설정에 있어 과다한 할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MRV 체계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할당계수 개발의 원칙 및 방법론 설정, 관장 기관이 개발한 할당 계수에 대한 검증·평가실시 등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외, 검증심사원 자격·등록체계의 강화와 심사원 보수 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부실 검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검증인프라를 강화하고 심사원 양성과정도 국내 전담 강사진을 확보하고, 강사 양성과정 개설과 양성과정 커리큘럼 개발 등 교육체계도 세계 수준으로 확립하여 양질의 검증심사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목표관리제의 기대효과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다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대규모 배출업체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실가스·에너지 의무보고와 제3자 검증체계의 마련을 통해 관리업체들은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 즉 MRV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는 목표관리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운영이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